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의안번호 : 제2451호
- 제출일자 : 2025년 2월 3일
- 회부일자 : 2025년 2월 6일

2. 제 안 이 유

- 서울시에서 조성·운영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 위임 및 민간위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 요 내 용

- 가.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운영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4조의2 신설)
- 나. 그 밖의 문구 정비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- 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 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 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 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
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
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
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 11. 14. ~ 12. 4.) 결과: 의견없음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조성·운영 중인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.

나. 검토 의견

- 「동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) 제35조¹⁾제1항 및 제2항은 시장이 ‘동물보호센터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서울시는 ‘동물보호센터’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동 조례 제24조²⁾에 따라 ‘동물복지지원센터’를 운영하고 있음.
- ‘동물복지지원센터’의 주요 기능은 법 제35조제3항³⁾에 따른 ‘동물의 구조·보호’,

-
- 1) 「동물보호법」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2) 제24조(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기능
 2.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, 보호, 분양 및 법 제46조에 따른 처리
 3. 분양예정 동물의 동물등록 및 중성화 수술
 4.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
 5. 동물보호 시민 교육 및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
 6. 동물학대 및 동물관련 상담
 7.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동물 의료지원
 8. 동물보호 정책의 연구 및 기획
 9. 동물보호 시민운동의 지원
 - 9의2.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(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이 그 반려동물의 죽음이나 실종 등으로 과도한 우울감이나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를 말한다)의 예방 및 완화 지원
 10.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관리 및 방역
 11. 재난 발생 시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피 방법에 관한 교육
 12.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
③ 동물복지지원센터의 홍보 및 운영 자문을 위해 비상임으로 명예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, 명예 센터장이 동물복지지원센터와 관련하여 회의 참석 또는 자문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- 3) 「동물보호법」 제35조(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)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·보호조치
 2.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
 3.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
 4.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·분양
 5.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
 6.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
 7. 유실·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
 8.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
 9. 그 밖에 동물의 구조·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

‘동물의 기증·분양’, ‘유기·유실 동물 예방’, ‘동물학대 행위 근절 홍보’ 등으로 서울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총 3개소를 거점형으로 운영하고 있고, 1개소를 신규 설치⁴⁾ 중에 있는 등 시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.

- 안 제24조의2는 ‘동물복지지원센터’의 운영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,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,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시장과 별도로 구청장에게도 ‘동물보호센터’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2항은 구청장이 ‘직접 설치·운영하도록 노력할 것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한 ‘동물복지지원센터’는 자치구로 위임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
또한, 현재 법 제35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, 가능할 것으로 역량이 검증된 민간기관(대학, 단체 등)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, 민간 위탁 근거 마련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됨.

- 최근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이 급증한 반면, 동물학대, 동물유기,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, 올바른 사육문화 조성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통합적이고 체계화된 동물보호 정책 추진이 요구될 것임.

4)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 3개소 : 마포센터(서부권), 구로센터(서남권), 동대문센터(동부권)

□ 2024년 실적

- 유기·사육포기·피학대 동물 입양·기증(110마리), 검진·중성화 등 치료(2,333건)
- 반려동물 시민학교(2,381명), 어린이교육(2,789명), 센터 자체 교육(864명)
- 민간보호시설 등 의료지원(354마리), 시민자원봉사 활동(884회, 2,294명)
- 입양문화 홍보 캠페인(9회), 홈페이지 운영(130,199명 방문) 등

명 칭	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('17.10.)	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('21.1.)	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('23.11.)
소재지	마포구 매봉산로 31 (610.5㎡)	구로구 경인로 472 (206.6㎡)	동대문구 무학로 201 (552.9㎡)
시 설			

□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 추진 1개소 : 강동센터(동남권)

- 소재지 : 강동구 길동 12-7
- 건축규모 : 연면적 1,363.65㎡(지하 1층, 지상 3층)
- 사업기간 : '24.1.~'27.9.